1. ..... $\cdot 1$
2• ..... - 2

## 김해시복지재단 \& 김해청년다옴 업무협약서

##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청년다옴은 양 기관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

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제1조(목적)
본 협약은 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청년다옴은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 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
제2조(운영원칙)
(1)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뢰와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 다.
(2)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,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 의하여 정한다.
제3조(협력 범위)
김해시복지재단과 김해청년다옴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 위 내에서 상호 협력한다.

1. 청년관련 포럼, 프로그램, 김해시 협력사업 등에 관한 협력
2. 청년관련 조사•연구 및 재능나눔 활동 협력
3.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실천협력
4.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
5. 기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업 진행

## 제4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.
제5조(협약의 변경)
본 협약의 내용과 세부계획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문서 로 상호 통보하되 협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. 단,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 해야 된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 할 수 있다.
제6조(효력발생 및 협약기간)
(1)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, 협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 약의 효력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.
(2) 협약기관은 유효기관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 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.
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 부를 작성, 양 기 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.
2021년 9월 8 일

## 6 김해시복지제딘



